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관리 체계 구축〉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60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검토	3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3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5
다. 검토사항	9
2. 조문별 검토	14
가. 정의(안 제2조)	14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16
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9
라.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안 제8조)	23
마. 실태조사(안 제9조)	27
바.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등 (안 제10조, 제54조제2항제3호 및 부칙 제4조)	33
사. 축산물품질평가사 및 업무(안 제11조 및 제12조)	38
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안 제14조)	43

자. 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안 제15조 및 제54조제2항제3호) ..	47
차.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16조 및 제54조제2항제4호) ...	50
카. 축산물 등급판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55
타.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관리(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58
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33조)	68
하. 축산물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 장려(안 제34조 및 제35조) ...	71
거. 물수축산물등의 이관(안 제36조)	75
너.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78
더. 가축시장의 운영(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80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9조 및 제50조)	83
며. 부칙	85
 ※ 참고자료	 9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18.
3.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가축거래·거래 투명성 확보·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 등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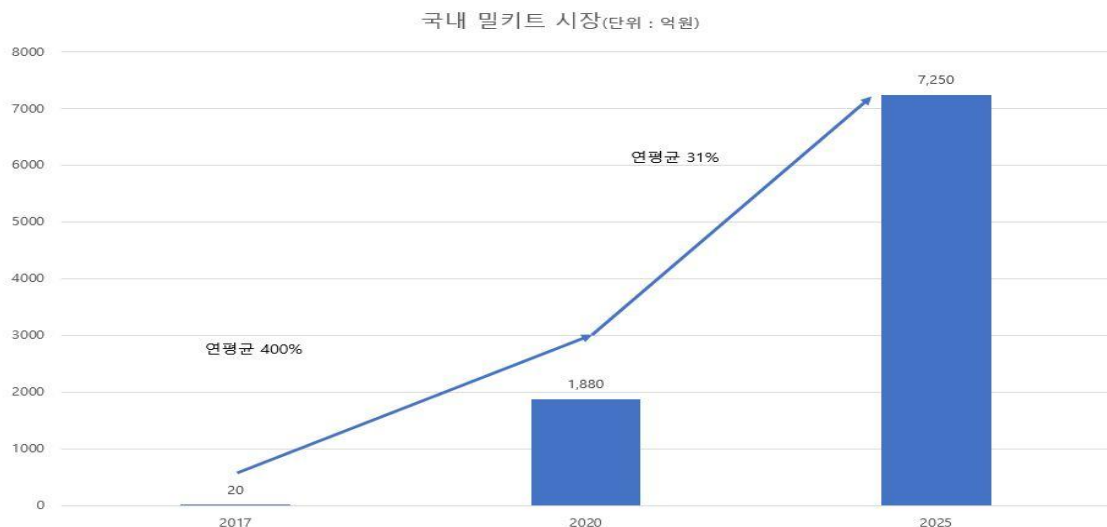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제정안의 배경 및 취지

최근 코로나19 이후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함. 소비측면에서는 가정 내 소비가 증가¹⁾하고 간편식(HMR²⁾) 선호³⁾ 등의 소비 경향성의 변화가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시장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⁴⁾임.

<국내 간편식 시장 성장 추이>⁵⁾



1) (증가율) 국내산 돼지고기 44.2% > 한우 쇠고기 31.5% > 닭고기 29.9% > 수입산 쇠고기 26.7% > 수입산 돼지고기 15.3% > 오리고기 12.5%

2) Home Meal Replacement: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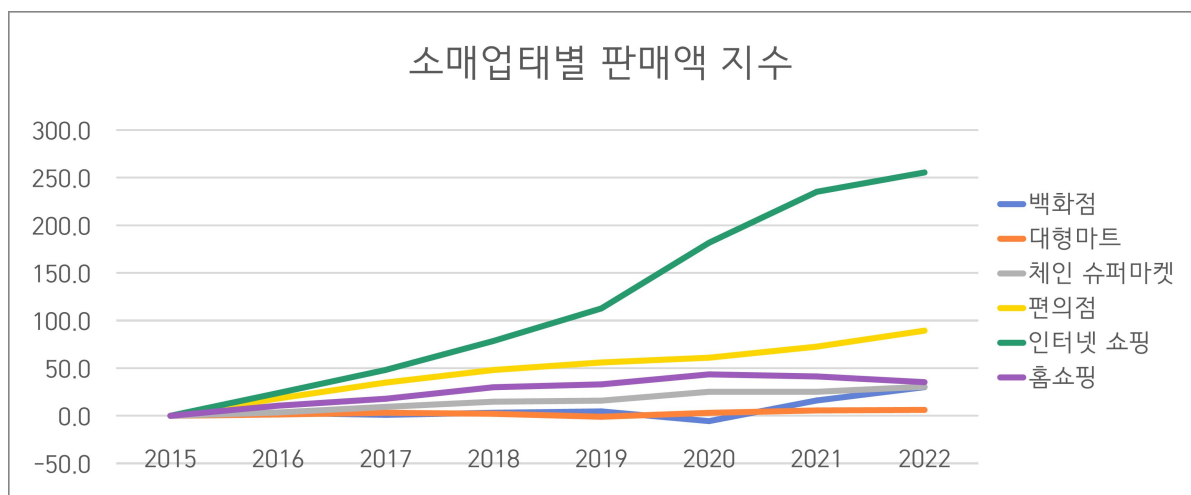
3) '17년 20억원에서 '20년 1,880억원으로 약 94배 성장했으며, '25년 7,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4) 월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에서 한우 쇠고기 선호비율은 25.2%인 반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2.0%로 소비시장 양극화 발생

5) 출처 : 유로모니터·aT식품산업통계정보

공급측면에서는 온라인 거래[온라인 거래는 기업·소비자간 최종소비
재 거래(B2C), 온라인-오프라인 융합거래(O2O, 고기나우 등), 소비자
직접거래(D2C, 설로인 등) 등]가 보다 확대되고 있고, 온라인-오프라
인 융합거래, 기업-소비자 직접거래(D2C⁷⁾)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확
장되고 있음.

<온라인거래 성장 추이>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불변 지수를 사용(2015=100)

** 자료 : 통계청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유통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규정을
단일법으로 정리하여 이를 위한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는 취지에서 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임.

6)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급성장 중이며, 특히 농축수산물은 최근 5년간 228% 증가

* 온라인 거래(조원, 통계청) : ('18) 113 → ('19) 137 → ('20) 158 → ('21) 190 → ('22) 210

** 농축수산물거래(조원, 통계청) : ('18) 2.9 → ('19) 3.7 → ('20) 6.6 → ('21) 8.3 → ('22) 9.5

7) Direct to consumer: 제조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직접판매하는 방식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①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②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전환, ③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근거 마련 ④ 축산물 거래가격 조사·공개, ⑤ 축산물 거래 시 표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화, ⑥ 축산물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 장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9장, 2절, 54조의 조문과 17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2025. 11. 10.)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축산물 유통을 총괄하는 단일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2024. 7. 16.)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음.

세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을 참고하여 유통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조문들을 ‘축산물’에 적용하여 신설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제정안의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이관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문대림의원안과 같이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정부제출안과 같이 「축산법」상의 축산물 유통 관련 규정들을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제정안과 문대림의원안·정부제출안 비교]

제정안		정부제출안		문대림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 유통발 전 기 본계획 등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축산물 유통발 전 기 본계획 등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 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 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제3장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 화 사업)	제3장 축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 화 사업)	제10조(축산물 유통 정 보화 사업)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제15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제11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11조(축산물품질평가사)	
	제12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12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제4장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등	제13조(축산물 유통 관 련 전문인력의 육성)	제4장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원 등	제13조(축산물 유통 관 련 전문인력의 육성)	제14조(전문인력 육성)
	제14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제14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제11조(축산물 유통구 조 개선 사업)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 의 조사·공개)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 의 보고·공개)	
	제16조(표준거래계약서)			제12조(표준거래계약서)
제5 장 축 산 물 의	제17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5 장 축 산 물 의	제16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제1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17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19조(등급의 표시 등)		제18조(등급의 표시 등)	
	제20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19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정안		정부제출안		문대림의원안
품질관리	급판정 제21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급판정 제20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21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23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및 심사 등)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및 심사 등)		
	제2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5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25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27조(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인증의 취소 등)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28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30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29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6장 축산물의 수급관리	제31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30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32조(준용규정)	제31조(준용규정)		
	제33조(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의 설치)	제32조(축산물수급조절 협의회의 설치)		
	제34조(축산물 수급관측)	제33조(축산물 수급관측)	제9조(축산물 수급관측)	
	제35조(계약생산)	제34조(계약생산)	제13조(계약생산 등 장려)	
	제36조(물수축산물 등의 이관)	제35조(물수축산물 등의 이관)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6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7장 가축시장의 운영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7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제3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제40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9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41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40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42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41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43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42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정안		정부제출안		문대림의원안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제43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제45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46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45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8장 보칙	제47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8장 보칙	제46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48조(수수료)		제47조(수수료)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1조(벌칙)	제9장 벌칙	제50조(벌칙)	
	제52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제53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다. 검토사항

현재 축산물 유통에 대한 규율 법령으로는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이 있음.⁸⁾

제정안은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축산물의 유통 및 가축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농안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수산물 유통법’이 존재하므로, 일반적 농산물과 다른 유통과정상 특징을 가진 축산물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율체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축산법」은 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에 대하여 기본제도를 정하는 기본법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관련 조항은 부재한 상황이며, ‘농안법’은 도축 및 가공(발골, 절단 등)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축산물과는 다른 유통체계를 가진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축산물 시장구조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음.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규제 위주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식약처 소관의 법임.

8) 농안법상 ‘농수산물’의 정의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포함됨. 다만, ‘농산물’에 한하여 규정하는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농산물 및 축산물 유통 체계 비교]

- (농산물 : 무·배추) 생산자(농가) → 산지 유통인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소매업체(마트 등)
- (축산물 : 소·돼지) 생산자(농가) → [도축장]⁹⁾ → 식육포장처리업체(가공공장) → 소매업체(마트 등)

축산물 유통 관련 현행 법 체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법」은 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축산물 거래와 관련한 ‘가축시장 개설’, ‘가축거래상인 등록’에 관한 사항, 축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축산물 등급판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도 등을 규정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의 도축·수입·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이력관리 제도를 규정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축산물 유통 관련 현행 법률 및 조문]

축산법	축산물 이력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 가축시장 및 가축거래상인 · 축산물 등급판정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 도축단계 이력관리 · 수입단계 이력관리 · 유통·판매단계 이력관리	· 축산물의기준 및 규격 · 축산물의 검사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 관리

반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산물산지위판장, 이력추적관리, 수급관리, 유통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임.

9) []로 표시된 도매시장, 도축장은 소유권 변경이 아닌 경매, 도축 등이 이루어지는 경로(도축 단계에서의 소유권은 도축장이 아닌 생산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게 있음)

축산물 유통과 관련한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하여 축산물의 상품적 특성을 반영한 유통 관리가 가능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농안법’ 등에 포함되어 있고,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기존 법률에서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⁰⁾

10)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령이 있어 그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법령입안심사기준).

[제정안과 유사한 현행법상 조문]

연번	제 정 안	현행 법률
1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2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4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농안법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5	제9조(실태조사)	신설
6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7	제11조(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8	제12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축산법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9	제13조(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신설
10	제14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설
11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	신설
12	제16조(표준거래계약서)	신설
13	제17조(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14	제1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39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15	제19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16	제20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축산법 제41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17	제21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축산법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18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19	제23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신청 및 심사 등)	축산법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20	제2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축산법 제42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등)
21	제25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22	제26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축산법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23	제27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법 제42조의7(인증의 취소)
24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축산법 제42조의8(인증기관의 지정 등)
25	제29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축산법 제42조의9(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6	제30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축산법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연번	제 정 안	현행 법률
27	제31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축산법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28	제32조(준용규정)	축산법 제42조의12(준용규정)
29	제33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30	제34조(축산물 수급관측)	농안법 제5조(농림업관측)
31	제35조(계약생산)	농안법 제6조(계약생산)
32	제36조(물수축산물 등의 이관)	농안법 제9조의2(물수축산물 등의 이관)
33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축산법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34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축산법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35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축산법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36	제40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축산법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37	제41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38	제42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축산법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의 결격사유)
39	제43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축산법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40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41	제45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축산법 제34조의5(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42	제46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축산법 제34조의6(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43	제47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44	제48조(수수료)	축산법 제49조(수수료)
45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신설
46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축산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	제51조(벌칙)	축산법 제53조(벌칙)
48	제52조(벌칙)	축산법 제54조(벌칙)
49	제53조(양벌규정)	축산법 제55조(양벌규정)
50	제54조(과태료)	축산법 제56조(과태료)

2.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가축’, ‘축산물’, ‘축산물 유통’, ‘가축거래’, ‘축산물 유통시설’, ‘축산물 유통산업’, ‘축산물 유통업자’, ‘축산업 경영자’를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축산물 유통”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축산물의 도매·소매 나. 가목을 위한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보관·가공·배송·포장 다.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4. “가축거래”란 소·돼지·닭·오리·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축산물 유통시설”이란 축산물 유통산업에서 활용되는 기계·장치·장소 등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산업”이란 축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축산물 유통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축산물을 수집·보관·수송·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또는 산지유통인 나. 그 밖에 축산물 유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축산업 경영자”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정안은 ‘축산물’, ‘가축’, ‘축산물’, ‘축산물 유통’, ‘가축거래’, ‘축산물 유통시설’, ‘축산물 유통산업’, ‘축산물 유통업자’, ‘축산업 경영자’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동 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만, ‘축산물 유통업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제6호는 ‘축산물 유통산업’을 축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제7호의 ‘축산물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축산물을 수집·보관·수송·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산업과 유통업자의 범위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축산물 유통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축산물 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정안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은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다만, 축산물 중 ‘원유 및 유제품’에 관하여는 「낙농진흥법」에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원유의 계약 생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한우 수급조절 및 유통 지원’에 관하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26.7.23. 시행예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하여도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물별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사항]

낙농진흥법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진흥회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젖소 사육 전망

2. 원유 생산량 및 유제품 소비량
3. 제13조에 따른 집유조합(集乳組合)별 원유 생산 계획량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에 대한 원유 공급계획
5.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회는 원유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에게 원유 수급계획, 판매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유조합과 원유수요자는 제3항에 따라 진흥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원유의 계약 생산) ① 진흥회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원유생산계약”이라 한다)에는 계약기간, 원유의 계약 생산량, 진흥회의 원유 구입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이하 “계약낙농가”라 한다)는 원유의 계약 생산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를 진흥회에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흥회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낙농가가 낙농을 폐업하거나 축소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진흥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낙농가에 승계시킬 수 있다.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적·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등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등이 포함된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유통 정보화
4.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5.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지원
6. 그 밖에 축산물 유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 정 안

알려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 및 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후 농식품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본계획 등의 수립 후 국회에 보

고하거나 제출하는 절차는 부재한 상황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축산물 유통발전 정책에 대한 정책 점검 및 심의 기능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수산물 품질관리
4. 수산물 수급관리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안 제8조)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통 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축산물 유통 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3.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4.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의 거래수수료 등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산물과 달리 도축장을 거쳐야 하는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축산물 유통 정보의 집적화 유도, 전자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시스템 간 비교]

	종합정보시스템(제1호)	정보관리시스템(제2호)	전자거래시스템(제3호)
정의	전담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보의 수요자에게 각종 유용한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유통 시설이 주체가 되어 각종 유통 정보를 표준화하여 생산·관리하는 시스템	축산물의 원활한 전자거래를 위해 설치하는 시스템 (온라인 경매 시스템)
이해관계자	(정보 생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 수요) 정부, 기업, 대중 등	(시스템 운용) 축산물 유통업자	(거래참여자) 농가, 중도매인 등
목적	다양한 유통 정보(외부 정보 포함)를 유용하게 가공하여 제공	데이터 표준화하여 생산·관리·보존	전자거래를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
데이터종류및활용분야	(품질 관련 정보 제공) - 축종별 등급 현황 - 농장별 개량 지수 (수급 관련 정보 제공) - 사육현황·도축량 예상 추세 - 축산물 수입량 통계 - 시장 동향 및 가격 예측 (유통경로 관련 정보 제공) - 유통단계 경로 추적 - 주요 소비지 확인	(도축장 데이터) - 농장별 출하 대상 정보 - 축산물 이력제 정보 - 등급판정 결과 정보 - 안전성 검사(위생) 정보 (식육포장처리업체 데이터) - 가공(분할) 과정 정보 - 판매량·판매가격 정보 - 재고량(보관 상태 포함) - 판매 이력 정보 - 수입 축산물 수입신고 정보	(온라인 경매 적용) - 경매 참여자 확보 - 상장·입찰 등 경매 정보 제공 - 온라인 경매 실시 (거래 안전성 확보) - 거래 당사자 신원 확인 - 계약 및 거래 기록 보관 - 실시간 거래 현황 확인 - 결제 시스템 전자화(부정 방지)
유사사례	농식품부 홈페이지(외부망) - 다양한 농업 정보 제공	농식품부 인트라넷(내부망) - 내부 업무정보 생성 및 표준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전자 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물유통팀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식품부는 ‘농안법’ 제5조의3¹¹⁾ 및 제72조¹²⁾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포함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농넷(nongnet.or.kr) 등을 운영 중임.

따라서, 기존의 농식품부의 정보시스템에서 축산물과 관련된 유통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구 분	< 농넷 주요정보 >
유통정보	농산물 도매시장 경락가격, <u>소·돼지 도축두수</u> , 수산물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 등
소비정보	농산물 소매가격, 농산물 대형마트 매출액,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가격 등
생산정보	농산물 산지작황, 농산물 수급현황, 기상 정보 등
글로벌 정보	농산물 수출입 정보, 국제곡물 거래 정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 경매 시스템(안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 기존 도매시장 인프라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경매 물량과 참여자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축산물의 경우 품질이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실제 육질의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상의 영상 및 정보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품질 판단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온라인 경매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도매시장과의 연계 방안, 품질 검증 체계의 신뢰성 확보, 참여자 유인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실태조사(안 제9조)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소비실태, 경매 정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축산업 경영자 및 유통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2. 축산물 소비실태 3. 축산물 경매정보 4.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5.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6.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정보</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 등 관련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 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협조 요청을 거절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 ⑤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안법’ 제5조의2¹³⁾ 등에 근거하여 축산물 시장 거래가격(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등을 조사하여 축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경매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관계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현행법에 따라 조사·공표되고 있는 사항이 다수임.

- 13) 농안법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저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사대상]

구 분	현 행			제정안 추가 사항
	법령상근거	조사내용	조사공개	
축산물 시장 거래가격 (제1호)	농안법 제5조의2,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2조의2	산지가격(육계, 계란, 오리) 도매가격(닭, 오리)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생산자-유통업 체간 직거래 가격)
축산물 소비실태 (제2호)	농안법 제5조의2	소매가격(소, 돼지, 닭, 계란, 우유) 5개 품목(29종)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소비 트렌드 등 소비 동향
축산물 경매정보 (제3호)	농안법 제5조의2	경락가격(소, 돼지, 계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제4호)	-	미국(소, 돼지 지육가격), 호주(어린이소 가격), 독일(돼지 지육가격)	주간 해외 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
축산물 등급정보 (제5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41조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말, 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
축산물 이력정보 (제5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이력정보(소, 돼지, 닭, 오리, 계란)	축산유통정보 다봄 누리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 제9조제1항제6호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정보’를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축산물의 가격 관리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가격 ‘관리’라는 용어는 국가가 행정적 통제나 개입을 통해 가격을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제정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 시장 거래가격’을 안 제9조제2항제4호의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 유통 관련 협회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 제9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 거래단계별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직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공표함으로써 계란 등 거래가격이 불투명한 축산물에 대한 적정 거래가격 제시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이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란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생산자 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⁴⁾ 이를 금지하는 대신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직접 거래가격을 조사·공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14) 현재도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고시에 대해 ‘25.6월부터 공정위 조사 진행 중

[공정위 계란 가격고시 관련 사건처리 결과]

① (사)대한양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2009서총1641) : 경고

- 고시가격은 강제력이 없는 참고가격으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상인과 농가와의 흥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구성사업자들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정도는 크지 않음

② (사)대한양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2011서총1836) : 주의

- 단순한 가격정보에 불과,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구성사업자에게 제재하는 등 경쟁 제한한 사실이 없는 점, 정보 제공한 가격 중심으로 일정하게 가격이 유지·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대한양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2019서총0819) : 무혐의

- 공유한 가격정보가 '전략적 정보'로 보기 어려움, 가격통지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구성사업자들이 피조사인의 가격통지행위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계란과 같은 품목에서 이와 같은 정부 제시 가격이 사실상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여 거래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타당성과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조사의 목적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한정된다는 점과 제정안의 '시장 거래가격'이 공개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닌 생산자와 유통업체간 '직거래 가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면, 이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대해 관련 협회에서는 거래가격은 민간의 영업비밀로서 거래가격의 조사 강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한산란계협회’는 민간의 영업비밀이나 경영 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또한 가격은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임.

‘한국축산물처리협회’¹⁵⁾는 축산물의 거래가격은 도축 이후 등급 판정, 정산 방식 및 가공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단일한 시장 가격 개념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공개할 경우 시장 참여자 간 가격 경쟁이 위축되고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는 등 시장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제정안 심사 시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도축장을 대표하는 협회

바.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등(안 제10조, 제54조제2항제3호 및 부칙 제4조)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정보화, 축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 관리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립하고, 부칙을 통하여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① 축산물 유통, 제1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 가축·축산물 이력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및 상담·지원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외국기술의 보급 3. 축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등급판정 6. 등급판정에 관한 기술 개발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축산물의 수출입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제 정 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축산물 유통, 등급판정 및 가축·축산물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13.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 및 계약생산·계약출하 관련 분쟁예방·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14. 축산물 수급관측 지원, 가격동향 분석 및 공표 지원
 15. 축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⑧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 제4조(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 정 안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한 행위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제36조¹⁶⁾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제정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외국기술의 보급(안 제10조 제4항제2호), ‘축산물 유통시설 설치·운영’(제3호), ‘축산물 수급조절 및

16)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축산물 등급판정 2.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 축산물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제8호), ‘수출입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안 제9호·10호),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및 분쟁예방 등 컨설팅 지원(제13호), ‘축산물 수급관측, 가격 동향분석 및 공표 지원(제14호),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제15호)’의 업무를 추가하면서,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 전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변동사항]

항목	기존 추진사업 (前 축산법 제36조)		⇒	제정안	
추진사업	등급판정	- 축산물 판정 - 조사·연구·교육·홍보 - 기술 개발 - 조사·연구 - 품질평가사 양성		유통업무	- 조사·연구·교육·홍보 - 컨설팅 지원 - 전자시스템 운영 - 유통시설 설치·운영 - 외국기술 도입·알선
	이력관리	- 정보 기록·관리		등급판정	- 축산물 평가 - 기술 개발 - 품질평가사 양성
	유통업무	- 조사·연구·교육·홍보		이력관리	- 정보 기록·관리
	기타	- 그 외 위탁사업		수급관리	- 수급조절 지원 - 가격안정 지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운영 방향 (기존) 등급판정, 품질평가, 유통조사					
					
(추가)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 전담			기타 - 수출입 지원 - 허가 정보 통합·운영 - 관련 국제협력사업 - 그 외 위탁사업		

항목	기존	변경
기관명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위상	등급판정, 품질관리 등 축산물 유통을 지원하는 임무 수행	축산물 유통 관련 주요 사업의 지원 및 관리 임무 수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정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¹⁷⁾으로 명칭의 변경 등은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대상임.

동법 제6조 단서¹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임.

-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사. 축산물품질평가사 및 업무(안 제11조 및 제12조)

제정안은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자격조건을 확대·완화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업무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u>축산 또는 식품 관련 학과</u>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u>2년 이상</u>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품질평가사시험의 실시 및 품질평가사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정한다. 제12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 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관리 3.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할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17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축산법」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및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조항을 삭제하여 이관하되,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축산물품질평가사 시험 응시 자격조건]

현행 축산법	제정안
1. 전문대학 이상의 <u>축산 관련</u> 학과 졸업(제37조제2항제1호)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 관련 업무 <u>3년 이상</u> 종사(제37조제2항제2호)	1. 전문대학 이상의 <u>축산 또는 식품 관련</u> 학과 졸업 2. 진흥원에서 등급판정 관련 업무 <u>2년 이상</u> 종사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사 자격 조건을 확대·완화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축산물품질평가사 시험 응시 학과를 축산 관련 학과에서 축산 또는 식품 관련 학과로 확대함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축산법」 제37조제2항¹⁹⁾은 축산물품질평가사 시험 응시 자격조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음.

19) 「축산법」 제37조(축산물품질평가사) ①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를 담당할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를 둔다.

② 품질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품질평가원이 시행하는 품질평가사시험(이하 “품질평가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최근 5년간의 축산물평가사시험 현황을 보면 응시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대다수이며, 채용인원이 많았던 2025년을 제외하면 경쟁률도 6.1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축산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평가사시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품질평가사현원	363	376	374	380	383
채용인원(A)	15	16	17	20	37
응시자(B)	94	106	153	122	141
경쟁률(B/A)	6.3	6.6	9.0	6.1	3.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축산법」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평가사시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응시율	-	-	-	5명	-
합격률	-	-	-	1명	-

* '21~'25년 중 '24년을 제외한 년도는 수요 부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축산물의 등급을 판정하는 업무는 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식품 관련 학과로 확대하는 경우 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될 수 있고, 이는 등급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관련 학과 및 식품관련 학과 현황]

□ [축산 관련 학과]'25년 기준 22개 대학(56개 학과) 1,971명

학교	관련 학과	대상자 수
강원대학교	동물응용과학과, 동물산업융합학과, 동물자원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식품과학전공, 수의학과	150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생물공학과, 수의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22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생명과학과	24
경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말/특수동물학과, 수의학과	100
경상국립대학교	축산학과, 축산생명학과, 동물생명과학과, 수의학과	103
국립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동물자원학과	51
국립순천대학교	동물생명산업학과, 동물자원과학과, 농생명과학과	50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생명자원학부	125
대구대학교	동물자원학과	32
부산대학교	동물생명자원과학과	24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과학과	47
상지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68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수의학과	93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스마트축산학과	142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수의학과	109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수의학과	110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수의학과	53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61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수의학과	99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식품생명·축산과학부(축산학전공), 수의학과	103
한경국립대학교	동물생명과학전공, 동물응용과학전공, 동물생명환경과학과	64
한국농수산대학교	가금학과, 낙농학과, 양돈학과, 한우학과, 대가축학과, 말산업학과 및 관련 전공 포함	143
22개 대학	56개 학과	1,971

□ [식품 관련 학과] '25년 기준 95개 대학(165개 학과) 5,004명

학교	관련 학과	대상자 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	그린식품가공과, 농식품생명공학부,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 동물식품응용과학, 스마트농식품과, 식품환경학부, 식품가공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식품공학부, 식품유통공학과, 식품품질관리과, 영양식품학과, 식품영양학 등 :	5,004
95개 대학	165개 학과	5,0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둘째, 제정안은 축산물품질평가사 시험 응시 자격조건인 등급판정 관련 업무 종사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등급판정 관련 경력의 축소는 숙련도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안 제14조)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물 유통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4조(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2. 도매시장·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3.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현재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3조²⁰⁾ 등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직거래, 온라인 거래²¹⁾ 등 새로운 축산물 거래제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20)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1) 농식품부는 공공주도의 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고, 축산물 도매시장 지원의 초석 마련을 위한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내용	· 지육 영상, 생산이력,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집행흐름	·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축평원·도매시장(공판장))
사업기간	· ('21년~계속) 「농안법」 개정('19.8월)에 따라 전자적 거래
사업지역	· 전 지역('21년 시범사업자 1개소, '22년 3개소, '23년 3개소)
지원기준	· 온라인경매시스템 구축(축평원, 민간보조 100%) 온라인경매 인프라 지원(도매시장 3개소, 민간보조 100%)



□ (추진 경과) 돼지 온라인경매 서비스 정식 출범, 온라인경매 적용 도매시장 추가 선정, 부분육 온라인경매 시스템 개발·적용 등 정상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물유통팀

이에 제정안은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사업 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체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14조제2호는 농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8조 제1항제3호에서도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제3호는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8조제1항제4호에서도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안 제8조)’을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안 제14조)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8조 및 제14조 비교]

제 정 안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u>축산물 유통 체계를 효율화</u> 하고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u>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1. 축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축산물 유통 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3. <u>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u>(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 <u>구축 및 운영</u>	제14조(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u>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u>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1.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2. 도매시장·직거래·온라인거래 등 <u>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u>

제 정 안	
4. <u>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u> 5. 그 밖에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의 거래수수료 등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u>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u>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자. 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안 제15조 및 제54조제2항제3호)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육포장처리업자²²⁾를 대상으로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 거래가격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거래하는 경우에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한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축산물 거래가격의 내용 및 제1항·제2항에 따른 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 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정 안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 거래가격 조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소고기의 경우 전체물량의 60% 이상²³⁾이 경매로 거래되고 있어 경매시장의 낙찰가격(경락가격)이 대표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돼지의 경우 ‘농가 → 유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 마트 등 소매업체 → 소비자’의 경로로 유통되며, 농가-유통업체 간 거래시 전체 유통물량의 3.7%²⁴⁾는 경매, 나머지 96.3%는 직거래로 거래 중임. 이처럼, 96.3%에 해당하는 물량이 직거래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농가-유통업체 간 거래가격은 3.7%에 불과한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정산하고 있어 대표가격 체계에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적절한 거래 참고가격 부재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²⁵⁾함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확대²⁶⁾되고, 적은 물량·품질 조절로 경락가격을 조절할 수 있어 시장개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 발생²⁷⁾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²⁸⁾를 참고하여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23) 최근 소 경매 비율 : ('05) 34.2% → ('10) 41.4% → ('15) 53.0% → ('20) 58.6% → ('22) 62.6% → ('23) 63.7%
(출처 :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 통계 > 등급관정 > 소도체)

24) 최근 돼지 경매 비율 : ('05) 15.9% → ('10) 10.5% → ('15) 8.4% → ('20) 4.8% → ('22) 3.9% → ('23) 3.7%
(출처 :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 통계 > 등급관정 > 돼지도체)

25) 경매 물량이 적고 품질이 편향(고품질 또는 저품질 중심 경매)되어, 농가 및 유통업체가 경락가격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보탐색비용, 협상비용, 관계비용 등 거래비용 발생

26) 월별 도매가격 최고-최저 차 : ('17) 1,491원/kg → ('19) 1,643 → ('20) 2,192 → ('22) 2,250

27) 돼지가격 하락기에 축산농가가 경매 물량을 줄이거나 고품질 돼지를 경매 시장에 출하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현장 불만 제기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를 제외한 “돼지” 등의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판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9조의 실태조사에서도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안 제1항제1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자도 농식품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차.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안 제16조 및 제54조제2항제4호)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 정 안
제16조(표준거래계약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 경영자 및 축산물 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을 거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축산물 유통 또는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 절차와 방법,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축산물 중 계란의 경우, 유통상인은 농가로부터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

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 후 4~6주가 지난 뒤 최종 가격을 결정하여 농가에 대금을 지급하는 ‘후장기 할인 대금 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후장기 거래가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7월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표준거래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축산물 유통거래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불공정거래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또한, 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²⁹⁾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간 표준계약서(닭, 오리)가 제정되어 있는 점³⁰⁾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닭, 오리)³¹⁾에 대해서는 제정

2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받은 계열화사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계약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30)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닭(육계, 산계, 토종닭을 말한다)의 경우 : 별표 1

2. 오리(육용오리를 말한다)의 경우 : 별표 2

3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

안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계란 가격조사·발표 체계 및 농가-유통인 거래 방식 개선]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1. 닭(육계, 토종닭, 삼계 만 해당한다)
2. 오리(육용오리 만 해당한다)

다만, 안 제16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4호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 내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축산물의 거래 구조는 농가 규모, 유통 경로,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가 계약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약조건의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다수의 입법례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에 대해 그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움.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입법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 표준가맹계약서 ”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농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3.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4. 농가지급금 또는 농가부담금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5. 가축사육실적평가 방식 및 그에 따른 농가지급금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
6. ~ 1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상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공통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조항에 대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카. 축산물 등급판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축산법」에서는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등급의 표시,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경로에 해당하는 유통과 관련된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규정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7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 부류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 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19조(등급의 표시 등) ①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판정 신청인 또는 해당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할 때에는 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그 영업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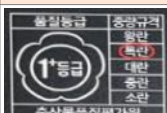
제21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축산물 등급판정’은 축산물의 품질향상, 유통 원활, 가축개량을 목적으로 축산물의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써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핵심조항이므로, 축산물 유통과 관련한 제정안에 관련 조항을 이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축산물 등급판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수행하고 있고, 대상 축종으로는 소·돼지(의무), 닭·오리·계란·말(자율), 꿀(자율)이 있음.

[축산물 등급판정 개요]

구분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말	꿀
시행시기	'92년		'03년	'07년	'12년	'19년	'23년
작업장	61개소(전용 4)	70개소(전용 13)	80개소	33개소	12개소	1개소	21개소
판정항목	육량판정	1차 판정	외관판정	외관판정	육량판정	품질분석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 등지방두께	 계란껍데기 청결도, 상처 등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육질판정	2차 판정	투광판정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상태, 잔털·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 등	육질판정	 수분, 산도, 과당/도당비, 향미, 색도, 항생제 검사 등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식감, 성숙도	 비육, 삼겹살, 지방부착, 육색, 육조식감, 결함	 파각(실금), 공기주머니 등 할란판정  난백높이 측정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식감, 성숙도		
등급의 종류	최종등급	최종등급	최종등급	최종등급	최종등급	최종등급	최종등급
	 (육질) 1 ⁺⁺ , 1 ⁺ , 1, 2, 3, 등외 (육량) A, B, C	 1 ⁺ , 1, 2, 등외	 1 ⁺ , 1, 2	 1 ⁺ , 1, 2	 (육질) 1, 2, 3, 등외 (육량) A, B, C	 1 ⁺ , 1, 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물유통팀(2024. 8. 21. 제출)

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관리(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축산법」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인증신청·심사, 유효기간 등,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소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7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0조제8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제 정 안

3. 제51조제3호부터 제15호까지 또는 제52조제5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4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정 안

1. 인증을 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2.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갱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출하를 유효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인증품에 대해서만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할 때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22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이를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27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갱신 관련 절차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고

제 정 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받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7.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제4호 또는 제5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로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

제 정 안

(試料)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는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2.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3.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4.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의 인증기관에

제 정 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제8항제3호에 따른 인증품의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7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제10항에 따른 압류 및 제11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취급하려는 상속인
2.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그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27조제1항, 제30조제8항 및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

제 정 안

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면서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농가의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증업무³²⁾는 인증기관에서 담당하고, 농가의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대상³³⁾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1항 각호에서 생산자와 취급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생산자는

32) 경영관련 자료, 생산계획서 등의 서류심사와 사육조건, 가축입식, 전환기간, 질병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의 현장심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

33)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제4조(인증대상)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³⁴⁾, 원유, 식용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취급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식육, 포장육, 원유·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축산물의 품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정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사료·사육조건·질병관리·가축분뇨 처리 같은 생산현장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축산물 유통보다는 축산 생산단계에 보다 가까운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안 심사 시 이관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4) 식육: 식용이 가능한 가축의 지육 및 정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면서 일정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에 인증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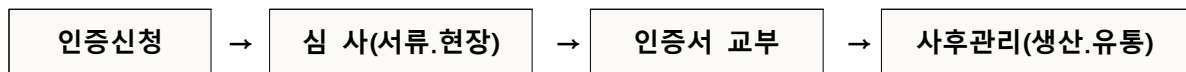
* 무항생제사료 급여,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수질기준 충족

- (법적근거) 「축산법」 제42조의2
- (업무 수행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효기간) 1년

□ 무항생제축산물 업무내용

- (업무 분담)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에서 담당, 농관원은 인증기관 지정·관리 담당, 농가 사후관리는 공동 수행
- 인증기관 35개소에서 인증 및 사후관리(연 1회 이상) 업무 수행

【 인증 절차 】



※ 경영관련 자료, 생산계획서 등의 **서류심사**와 사육조건, 가축입식, 전환기간, 질병관리, 가축분뇨처리 등의 **현장심사**를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종류

- 인증대상은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와 이를 취급하는 자로 구분

구분	생산자	취급자
표시 도형		원료의 인증표시 사용
개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인증품을 소분·포장하거나 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
시행	2007년 도입 * '20년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2007년 도입 * '13년부터 취급자 인증 의무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물유통팀(2024. 8. 21. 제출)

파. 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설치·운영 등(안 제33조)

「축산법」 제32조의4제1항³⁵⁾에서는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해당 조문을 이관하되, 정부가 2024년 7월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제2202144호)의 개정(안) 내용 중 ① 수급조절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 ② 해당 협회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3조(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설치·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u>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35) 「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 종류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조절협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가축 종류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가축 및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의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축산법」에 따라 두고 있는 수급조절협의회 관련 조문을 이관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급조절협의회의 비상설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개요 및 현황]

구 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법적 근거	축산법							
구성	2021. 3. 25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자문위원회(자문)							
설치 목적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주요기능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개선,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 등							
예산	1,000만원 (별도 예산 편성)							
위원구성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총 15명 : 당연(5명), 위촉(10명) - 공무원(3명), 민간위원(12명) - 위촉위원 임기 : 2년('25.9월 ~ '27.9월)							
최근 회의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6	1	1	0	5	5	0
	2023년	1	0	0	0	1	1	0
	2024년	-	-	-	-	-	-	-
	2025년	3	-	-	-	3	2	1
	2026년	4	-	-	-	4	4	-
	총계	14	1	1	-	13	12	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물유통팀

하. 축산물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 장려(안 제34조 및 제35조)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 사육동향, 도축·출하·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수급관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요 축산물의 수급 및 거래가격 안정을 위하여 축산물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4조(축산물 수급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 사육동향, 가축전염병 발병상황, 도축물량, 출하물량,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축산물 수요자와

제 정 안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조건의 표준화,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나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금융지원 또는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생산 등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안법’ 제5조는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 재고물량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³⁶⁾

같은 법 제6조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생

36) **농안법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자 관련 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⁷⁾

이에 「농업관측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산 품목에 대해 사육두수, 사육전망,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수출입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도축두수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관리에 관한 동 법률에 ‘농안법’에 따른 수급관측 및 계약생산 등 장려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안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내용이 제정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7) **농안법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관측사업 개요]

- ☐ 목적: 농업인 및 단체의 합리적인 영농의사 결정과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여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단기관측 : 주요 농축산물 32개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등 관측 정보 생산·제공
 - 중·장기관측 : 국내외 경제 및 농업경제의 여건변화와 동향, 전망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수출입 동향 등
 - 국제곡물관측 : 주요 국제곡물(4개 품목) 국제수급 및 가격변화가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자료 제공
- ☐ 지원조건: 출연 100%
-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
- ☐ 농업관측 품목(36개)

구 분	품 목
채 소(9개)	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당근, 양배추, 대파, 버섯
과 일(6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과 채(8개)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축 산(6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곡 물(3개)	쌀, 콩, 감자
국제 곡물(4개)	쌀, 밀, 옥수수, 콩

* 연도별 관측 품목수: ('99) 9개품목 → ('01) 24 → ('07) 28 → ('10) 31 → ('12) 34 → ('13) 35 → ('21) 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거. 몰수축산물등의 이관(안 제36조)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축산물등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관받은 몰수축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수축산물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매각·공매 대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6조(몰수축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무부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이하 “몰수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축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출하거나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안법’ 제9조의2³⁸⁾는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농산물등

38) 농안법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매각·공매 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농안법’ 정의상 농산물에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몰수축산물의 이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제정안은 몰수축산물등의 이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몰수축산물 이관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안법’ 제9조의2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조항은 2004년 「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조항이 신설³⁹⁾됨에 따라 2007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몰수농산물의 이관·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농안법」 제9조의2에서 “몰수농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 「관세법」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

39) < 2004년 「관세법 시행령」 신설 조문 >

제282조의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몰수품 등이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법 제3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농산물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요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관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관하는 몰수농산물에 대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과 범위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정안과 같이 해당 조문을 신설할 경우 “몰수임산물”, “몰수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 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10년간 관세청에서 축산물이 몰수된 사례가 없어 농식품부로 이관된 실적은 없음.

한편, 제정안은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을 ‘몰수축산물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축산물의 유통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몰수축산물’로 수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너.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축산법」에서는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제30조), 수입축산물의 관리(제31조) 및 수입이익금의 징수(제4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소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 수입 등과 관련된 규정을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축산법」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7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39조(수입이익금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물의 수입 추천, 수입 축산물의 관리 및 수입이익금의 징수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더. 가축시장의 운영(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축산법」은 가축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정안은 가축거래의 기반이 되는 가축시장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을 안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0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 정 안

제42조(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2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3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5조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 정 안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6조(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축산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업”은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이는 제정안이 축산물의 가축거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가축시장의 개설 및 가축거래상인 관련 조문을 「축산법」에서 이관하려는 것으로 가축거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취지로 이해됨⁴⁰⁾.

40) **가축시장이란** 가축(생축)거래를 목적으로 산지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소 등 축종별로 가축시장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시장에서 소 등 여러 가축의 거래가 가능한 것임.

가축거래 : 소(牛)·돼지·닭·오리·염소 등의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개설·관리주체는 축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내리고 있음.

<가축시장 운영 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축협	7	9	8	9	9	15	14	14	2	87
한우협회	-	-	-	-	1	-	-	-	-	1

※ 현재 운영 중인 88개 가축시장은 모두 소를 거래하고 있으며, 수요 발생 시 염소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

러.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정용시 공무원 의제(안 제49조 및 제50조)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품질평가사, 인증기관의 임직원,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정안에 따른 농림식품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

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50조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범위에 안 제 4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며. 부칙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조치, 「축산법」에서 이관하는 조문으로 인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1조제2항은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법 시행 후 14일 이내에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제 정 안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한 행위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축산물품질평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1조에 따른 품질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사람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품질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11조에 따라 한국축산유통진흥원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은 제17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같은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2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같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3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같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같은 법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제23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제24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 정 안

제8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2조의8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갱신 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갱신 신청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9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제33조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입 축산물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을 받은 자로 본다.

제11조(수입이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종전의 「축산법」 제45조에 따른다.

제12조(가축시장의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 개설의 등록을 한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 개설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13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은 제41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경우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

제 정 안

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축산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한이 연장된 자는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의 기한이 연장된 자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인증취소, 지정취소 및 조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가축시장”으로, “「축산법」 제34조의2”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축산법」 제40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중 “「축산법」 제40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6호 중 “「축산법」 제34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축산법」 제2조제9호”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시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검정기관”으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3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2의2.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 안

④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축산법」 제45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법」”을 “「축산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34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5호로 하고,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⑩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과 축산물”을 “가축”으로,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가격안정”으로 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축과 축산물”을 “가축”으로, “가격안정·유통개선”을 “가격안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축산물의 수급 등”을 “축산업의 허가 등”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를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 정 안

제4장의 제목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축산환경 개선 등”으로 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를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로 한다.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45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한다.

3의2.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수수료)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7호 중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⑪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40조”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법」”을 “「축산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중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중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안에 따라 하위 법령의 제·개정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 시행을 위한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축산법」의 경우 조문 이관 과정에서 조문 이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정안 심사시 본칙의 내용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부칙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⁴¹⁾

문 의 처
02)6788-5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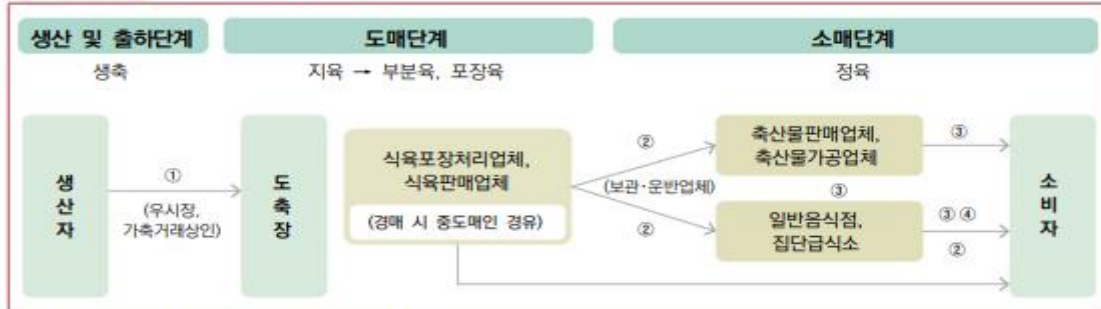
4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참 고

축종별 유통 흐름

☞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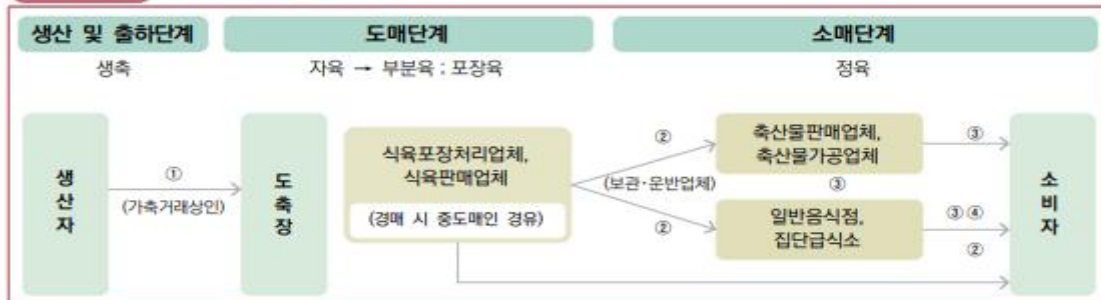
그림 IV-1 쇠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 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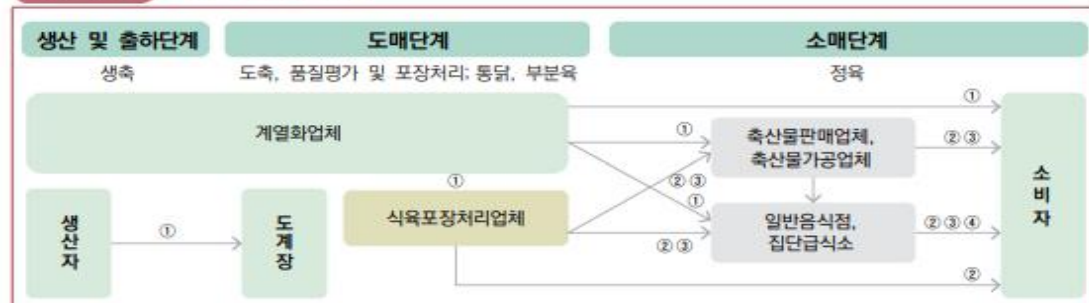
그림 IV-2 돼지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 닭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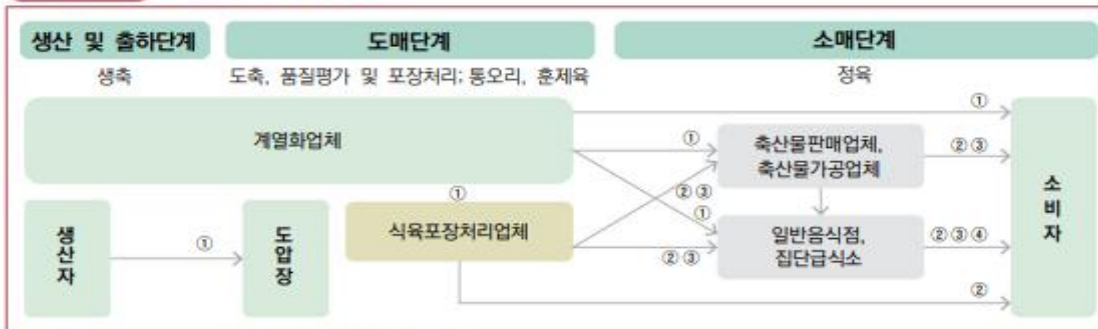
그림 IV-5 닭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오리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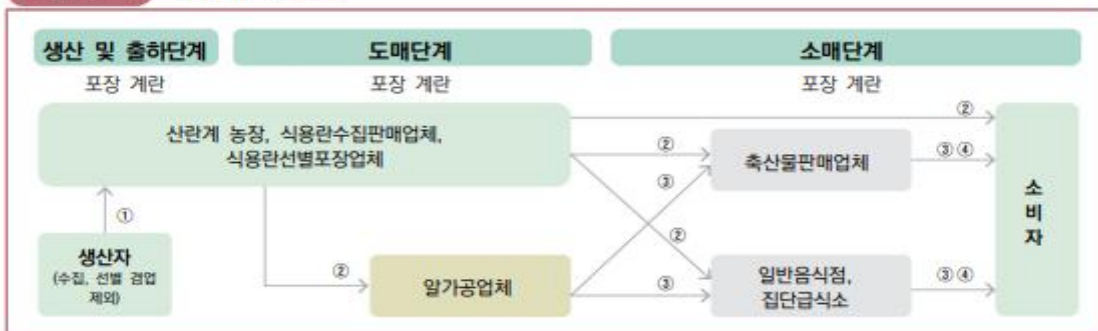
그림 IV-6 오리고기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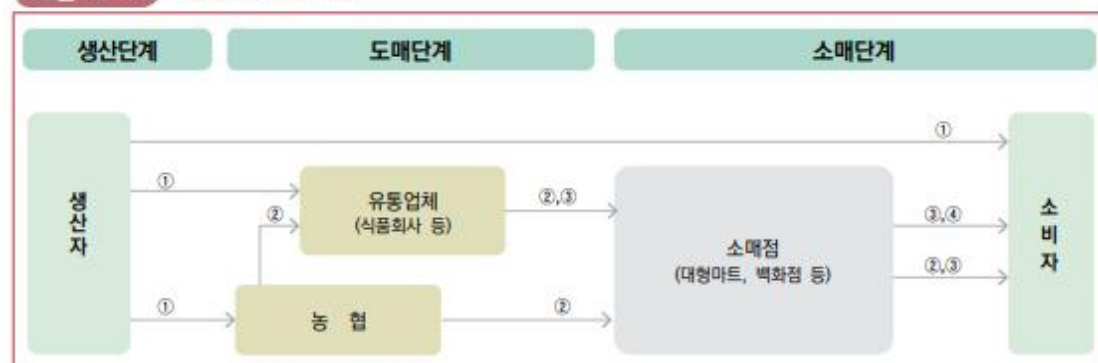
그림 IV-7 계란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벌꿀

그림 IV-8 벌꿀의 유통흐름



주) 숫자 표시는 유통경로상 단계(횟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축산물유통정보조사보고서(2024)

1.